

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 2일(긴급한 항행이 필요한 (Durations) 경우 6시간)
신청인	상호 (법인명)	성명 (대표자)	국적
	주소		
	(소재지) (전화:)		
변경사항(신·구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)			
변경사유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

유의사항

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
-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
- 환자의 이송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

처리절차

